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6. 1.

(주)웹플레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웹플레이
대표자	허동규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쉐어박스 〉 약 43,000 / 파일스타 〉 약 5,000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72억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허동규 대표이사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2025.01)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결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담당자

2025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webplay
(주)웹플레이

주식회사 웹플레이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온라인 신고 페이지 (쉐어박스)

· https://sharebox.co.kr/company/?todo=helpme





- 온라인 신고 페이지 (파일스타)

· https://filestar.co.kr/event/e_view/campaign?pag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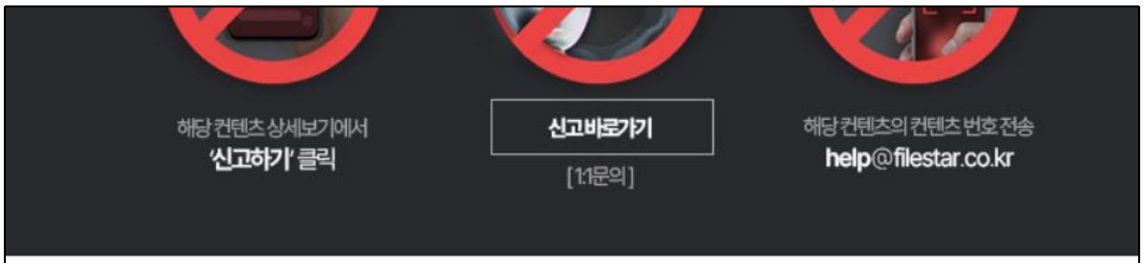

신고 접수 처리 과정

01. 신고 접수된 컨텐츠 검수 및 확인
02. 컨텐츠 삭제
03. 금칙어 등록 해시 값 차단
04. DNA 차단 등록
05. 처리 결과 안내
06. 효과적인 재발방지

그 밖의 더욱 강력한 원천차단 방법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요청서 접수 신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삭제 방법입니다.

- 상기 신고 요청서를 작성하여 help@filestar.co.kr 메일 전송합니다.
- 미기재 항목이 있을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하거나 미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 등 유통신고 요청서 접수 시,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5, 제3항의 따라 신고 요청서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회원 신고접수 | 비회원 신고접수

DNA 필터링

동영상 DNA 필터링은 영상의 소리 화면을 통해 영상물만의 특유 특징을 잡아내어 구분하는 방법이며, 웹하드의 해시차단 보다 고차원적인 차단 방식으로 높은 차단율에 효과적 전문업체를 소개합니다.

SPsoft www.spsoft.co.kr
DNA 필터링 전문업체 SPsoft(에스피소프트)

SPsoft(에스피소프트) 바로가기



- 온라인 신고 페이지 :

  · PC

  · MOBILE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쉐어박스 운영팀

  · 1661-0872 / shareboxcs@gmail.com

- 파일스타 운영팀

  · 1644-4743 / help@filestar.co.kr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쉐어박스

  · 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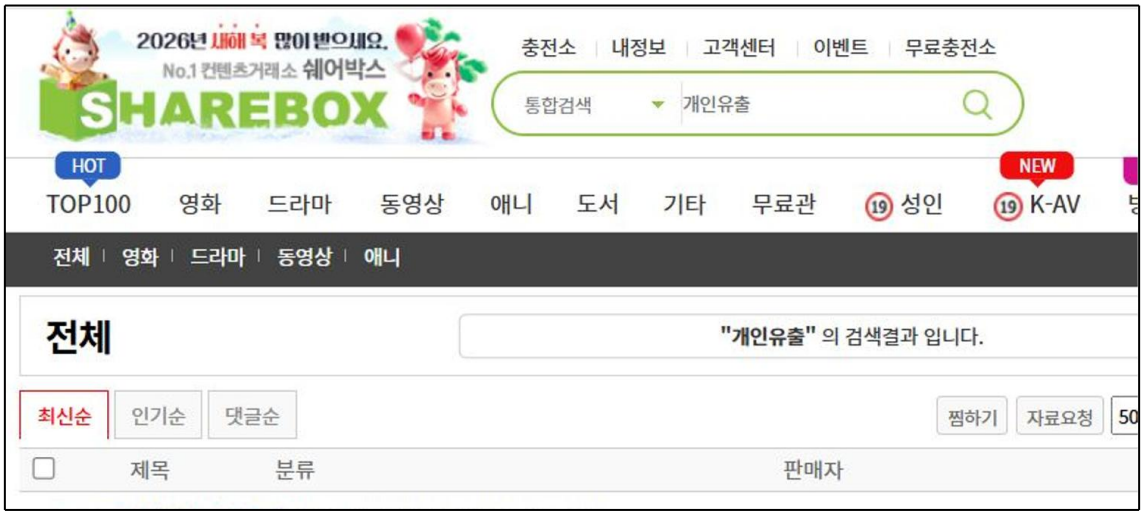


추천 2026년 1분기 ▶ [용사 파티에서 쫓겨난 다재무능]
"개인유출"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연관검색어는 검색보호 조치가 진행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기술적 조치 무력화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 ·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 쉐어박스

·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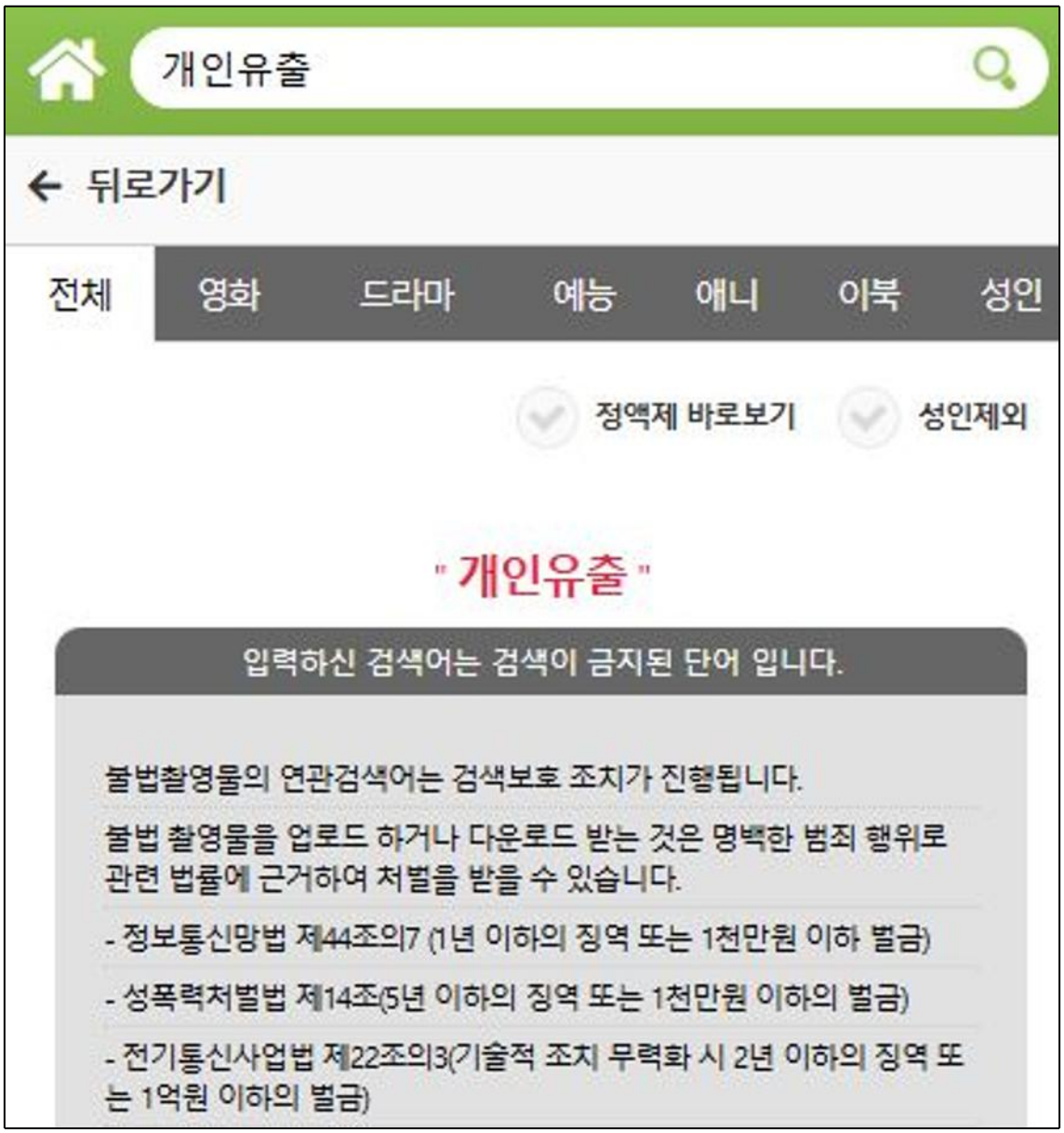
개인유출
뒤로가기
전체
영화
드라마
예능
애니
이북
성인
정액제 바로보기
성인제외
"개인유출"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 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연관검색어는 검색보호 조치가 진행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기술적 조치 무력화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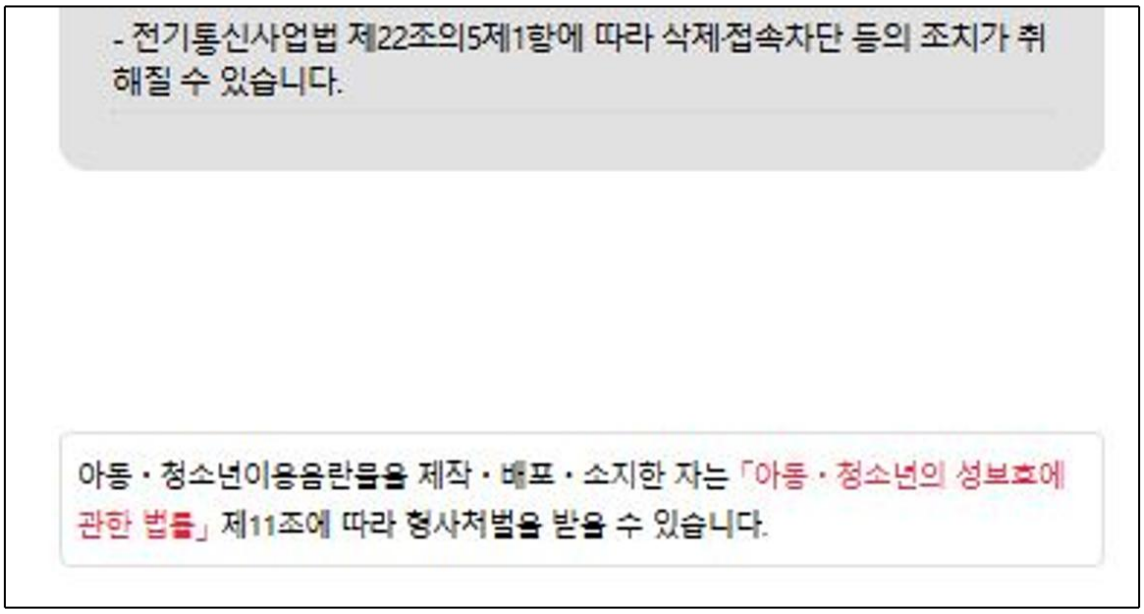

– 파일스타

· 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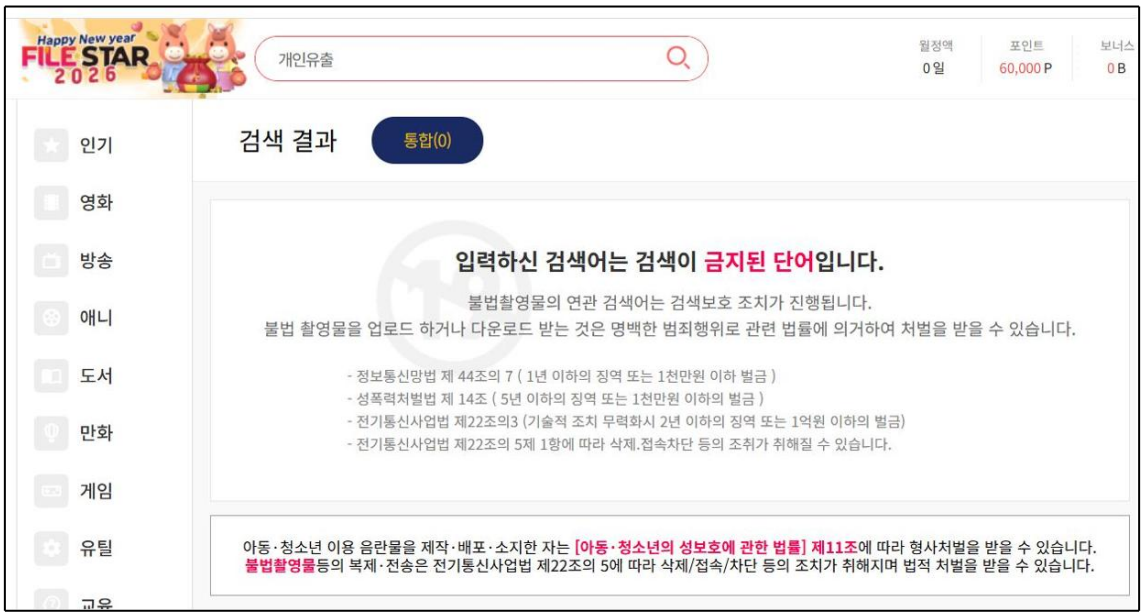

– 파일스타

·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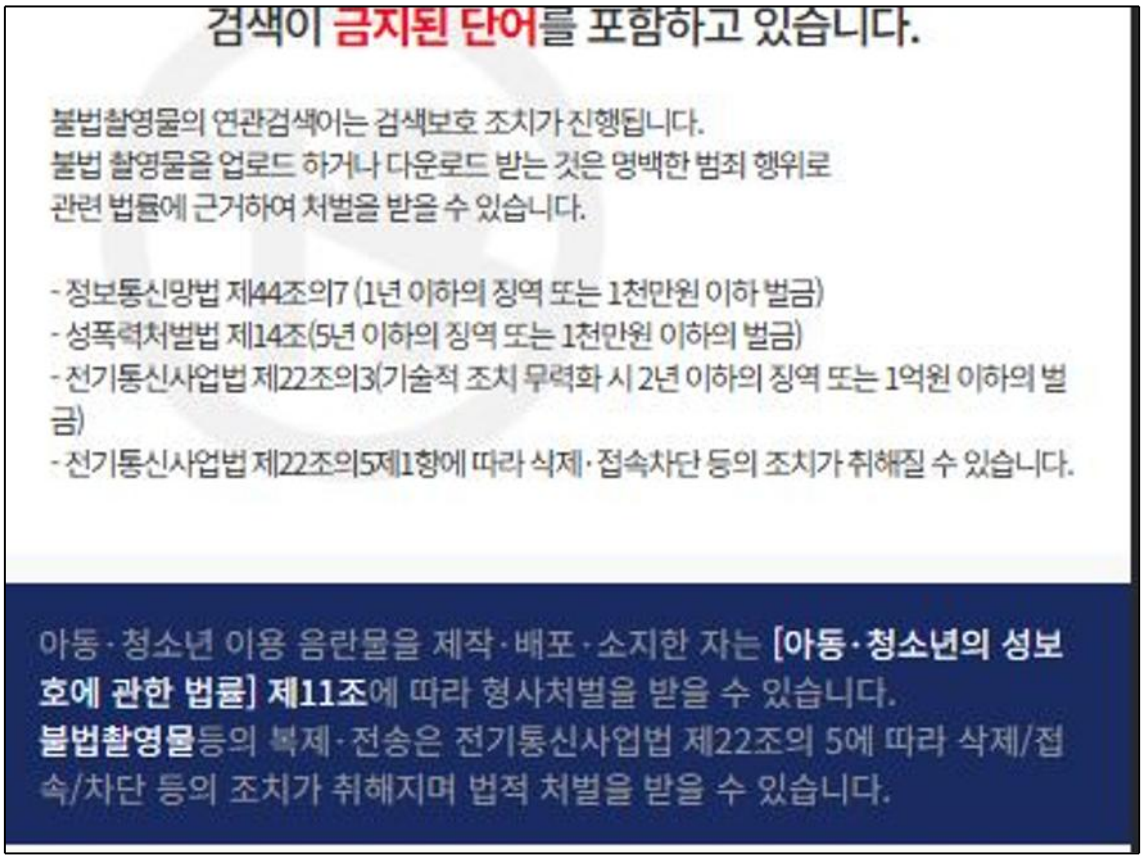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쉐어박스

·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사용되는 단어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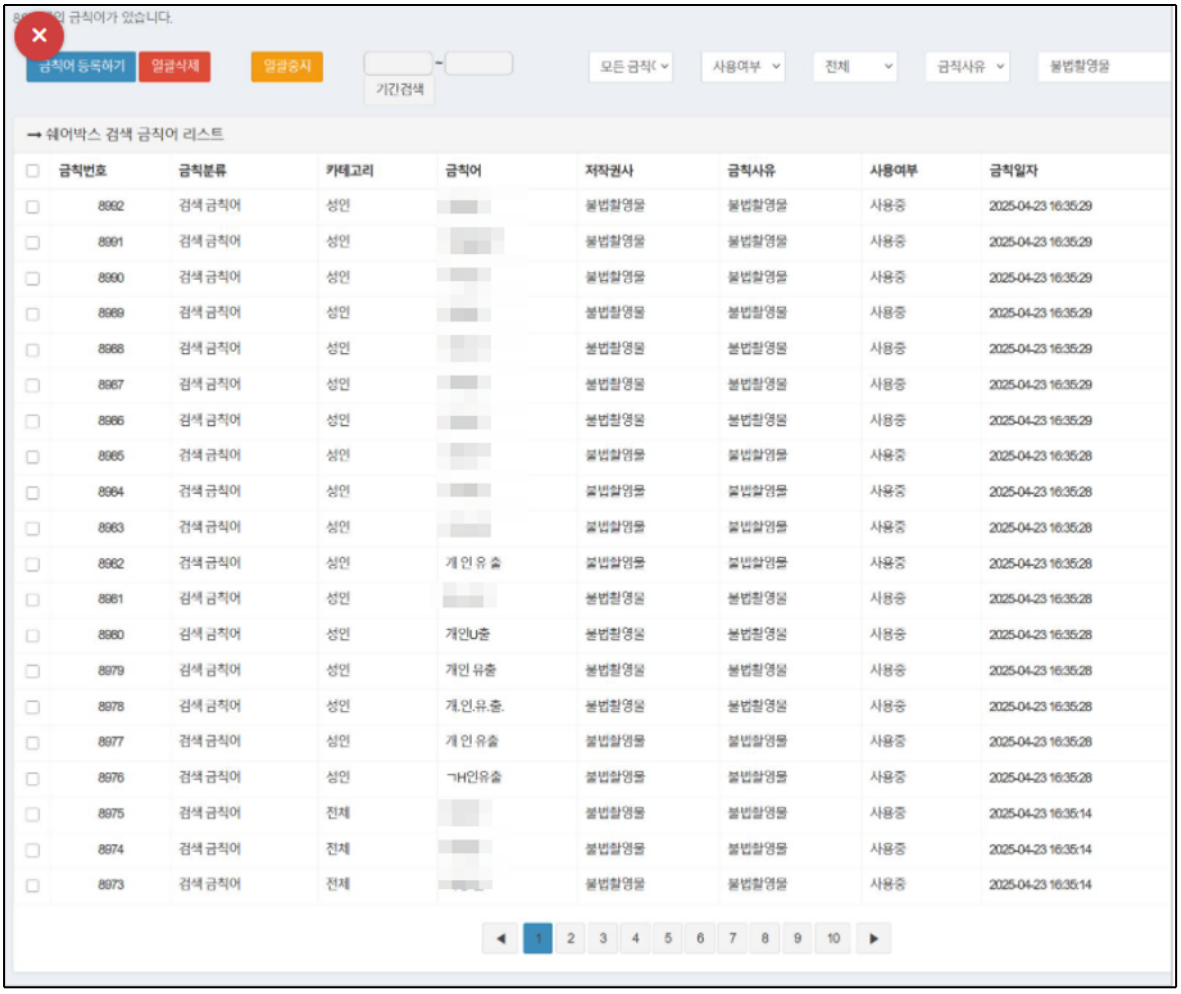

- 파일스타

·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사용되는 단어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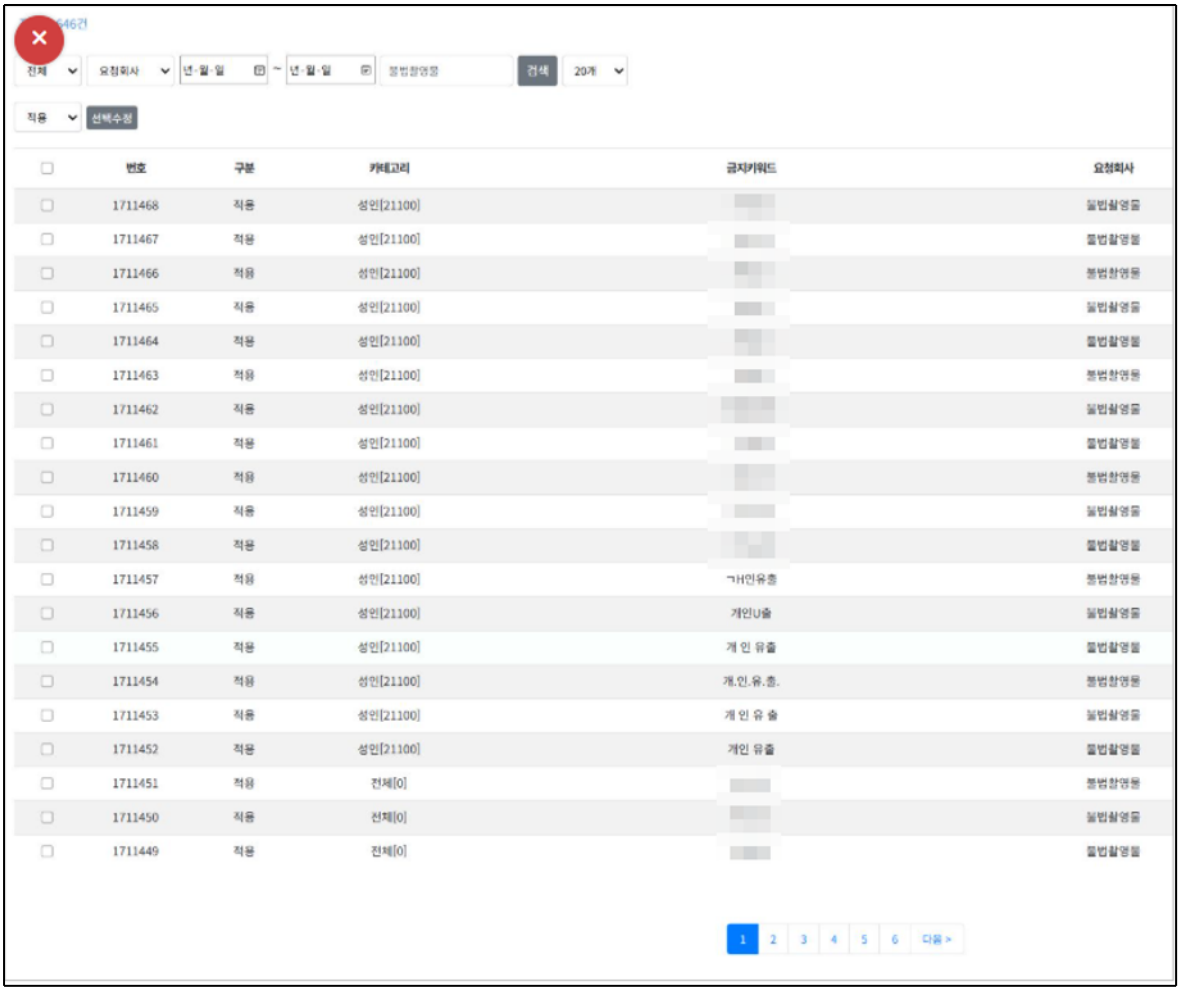

- 검색어 노출 제한

· PC

· MOBILE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쉐어박스	유	에스피소프트	
2	파일스타	유	에스피소프트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쉐어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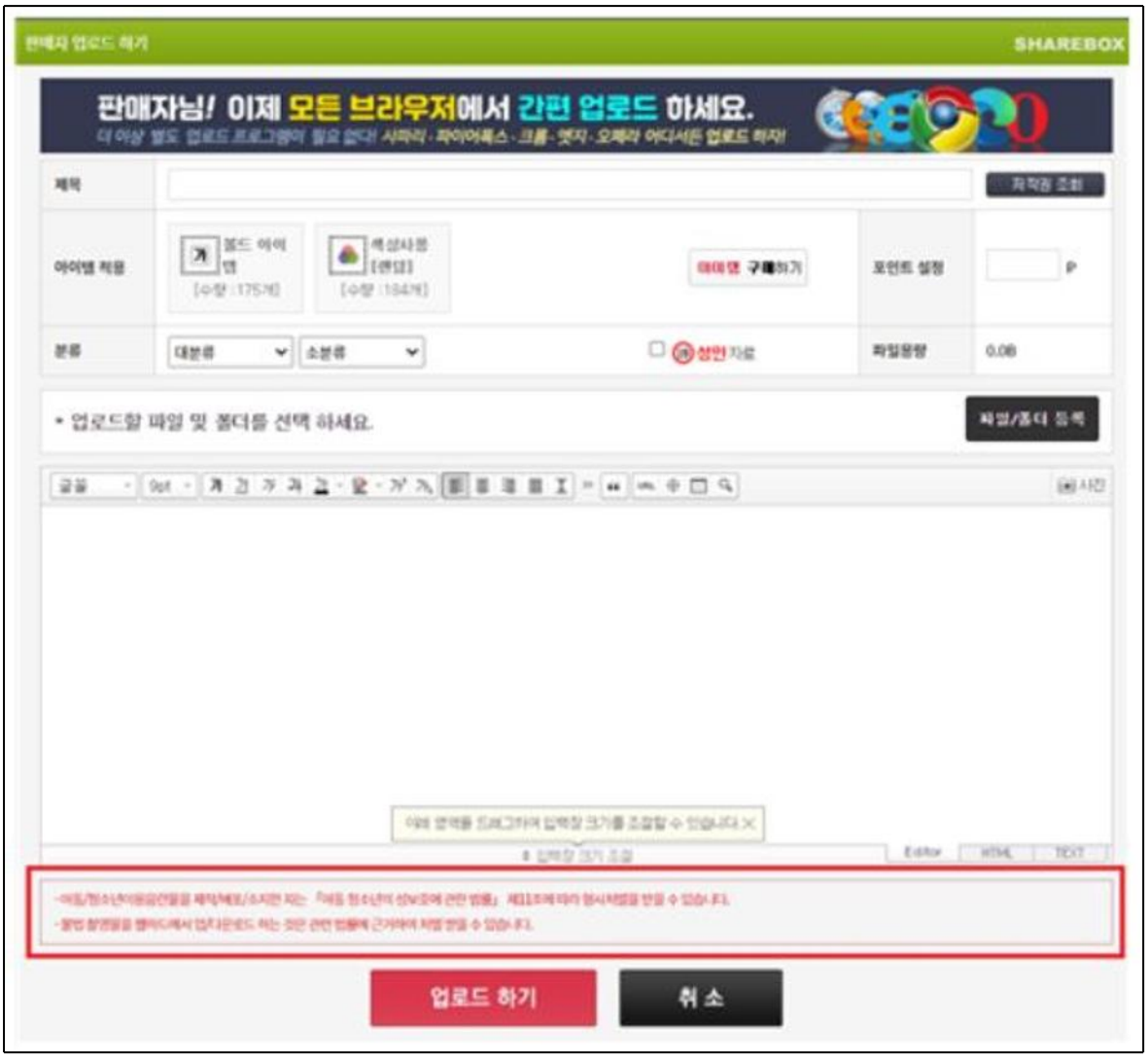

- 파일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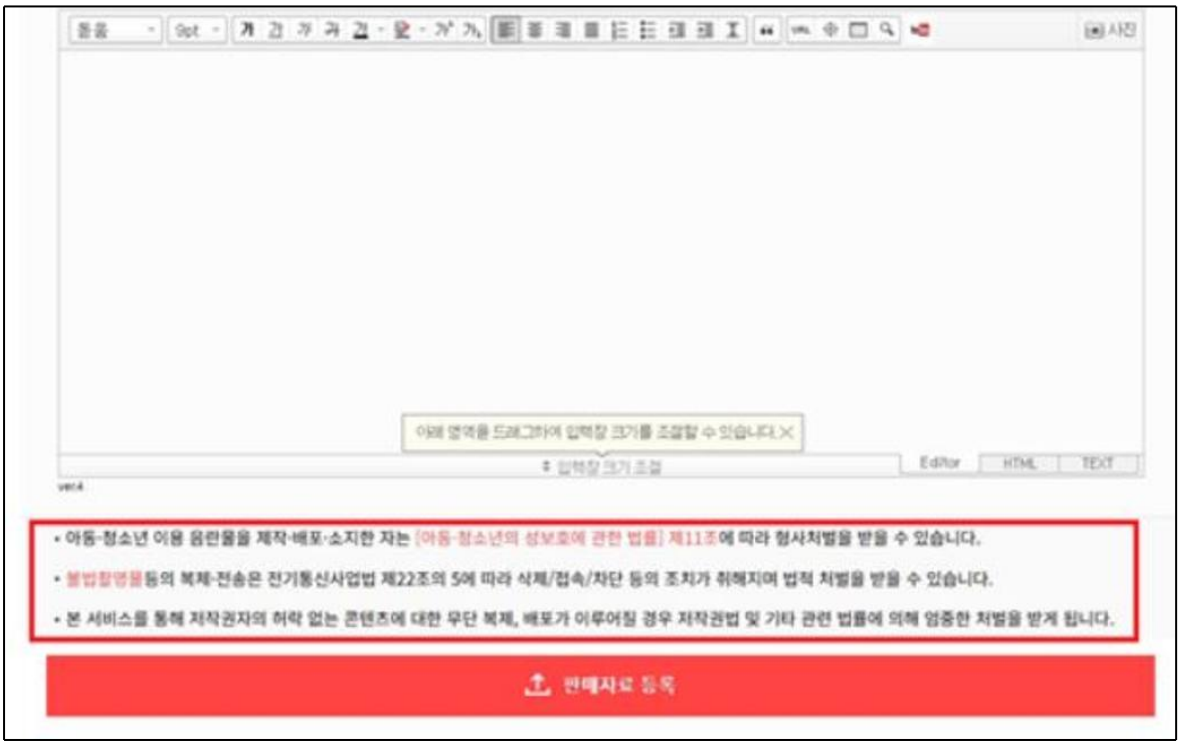

○ 로그기록 보관

- DB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DB를 주기적으로 백업관리

D9FD1E1F6340DE8BF6BA6429A0F9EC5821212286618	324EBF910BA246D192D5033BDE86F093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1B7EB8979691B754CC40F4CD22E24B9E2382693853	372230587BD99426BE5A7A9AC0D2FE1A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AE1EAE6EC88CA2B3AE64AF24D00C409F2766816520	49D08B2B8DD11FF5DF32280E6CF6C05F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55271421474E6D63DAEA0FBAAD67615952575841314	9C932670FFF83D871AE4D00490DDA89A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32FA6AA57ABDA1E18C7C08AC760B142F2724496607	D8CA09D88B43567833C7BF89198349AA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F1E2F742654E924F4002FB8CECD69BA422063744106	2800221CD8F8DE9FAD1095DC5260CA2A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108B2F1927D0DBF5C64E3F2144A77B7221686518128	0E173688F7B9C5A23200821FB31706FBD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6BC2672B0181E20E4284444EA9E6D5292991980098	5535AB608FD5F05C118E1C366541E598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A49D3A1B0EEE875557EB99790BEA13BD2186646528	AB1FC2B7E6D10C4E97170785CE05AAD5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CD333B54DE90272F2C697EF3627D1A352392716060	28915F659FDBC456065E81D6F2059CA2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10C4FB20DEEB5BE3E0F537FD3D951F2522018688614	648981580FF1A5AC476891F654F90FCB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A3E07BAB33F39C37E758D90175F33F8921198431178	7B0F2C7555600B700A43602DEFEEF4C1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D1044972A758ABDCDA2E8CA4CB5F42742455732129	8E96D147B2F74BB3AFF82BAC27EBDB05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E03BAE3400CEE9BF75F1EF07E56DA0862115343360	75C95173B792C5914CAB88AC3CDDC6BC	02	290462	동양포르노
494C5B01F2719148E751522311C303C221469153267	DD032E5E59A2BC45ADB1083A6581B9D3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6603A45C7DBB03FB5802869E8CDEEA4221996883770	1BE7CAA01B9559B6129196A7D3EDC9C2	02	1042482	방송통신위원회 유해 34221
C85DA10C0E011C37C061CC809106742B2962602945	6172EDBA104F816B624DF6A80FB4FBE0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1B7EB8979691B754CC40F4CD22E24B9E2382693853	372230587BD99426BE5A7A9AC0D2FE1A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ED96E01D52F1C1D68535D64741C9A8142401490795	FD7101F64012F1ACA896A3EF0E8F8AC8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32FA6AA57ABDA1E18C7C08AC760B142F2724496607	D8CA09D88B43567833C7BF89198349AA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8DC310D3AFB5B074BC6287A464A62CF82580946657	4A18092497A118CEA18867532E22F8B4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CBC66C89A026993243FA68DE834CAEE3296234O967	E6118B870569054A320D284410B6AAF1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4EF5FFEF7CC817E9D870A7AF19B5FECB22682317108	E21039B847533DA7AA9D5CE73BC5D9CCD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697956C265D8366D80E7BFAEB8D7E4BC2625782848	D01A7CB9F413ABBA168B019D40474E11	02	290462	동양포르노
B1C6ABEADC8EABDD0B88E79CDAF962802677089529	3BB28E9D5939F9429C38F4BFDE379CA4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0951D7BC0F8A4FFACC6AE5393CF9220821063137053	620818F4281B59A76CADB890DA2BE326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24460498CD150710263926ED0347A12322049322667	2660778452AF0D39AFE13A6351D2FC9D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491080678643O3D5E3A5EBFBCAE4F02C22658729753	7B95BE188825B21B1B8BC0D74E802E10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6BF265CAD3D15ACACC91BD22F7636D9F2835732683	61242A1164AC5E78EDA52419222B619E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8E0BB57D45D4593B9276283298D0B5882209079820З	7BF68BCB80F58B54505028E00760E546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10C4FB20DEEB5BE3E0F537FD3D951F2522018688614	648981580FF1A5AC476891F654F90FCB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7705B791AA06A7B7B931DE7B734A4CA92615562954	16DE258453B4EB68EB843405DCAF70AB	02		방송통신위원회선정유해물
E03BAE3400CEE9BF75F1EF07E56DA0862115343360	75C95173B792C5914CAB88AC3CDDC6BC	02	290462	동양포르노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캠페인 홍보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제한

· 쉐어박스



-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제한

· 파일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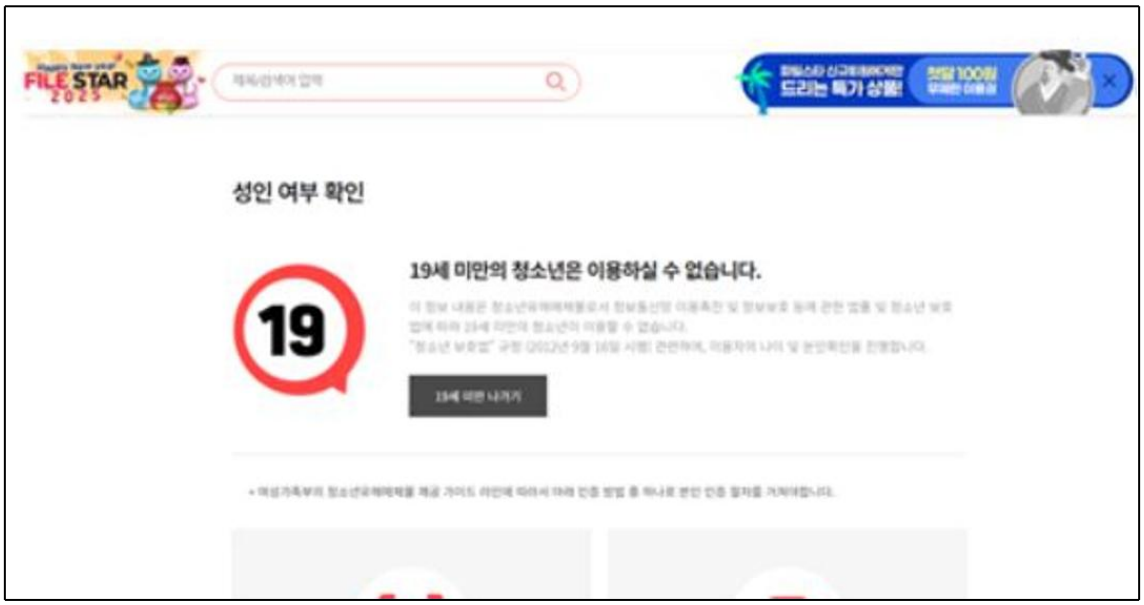



-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 쉐어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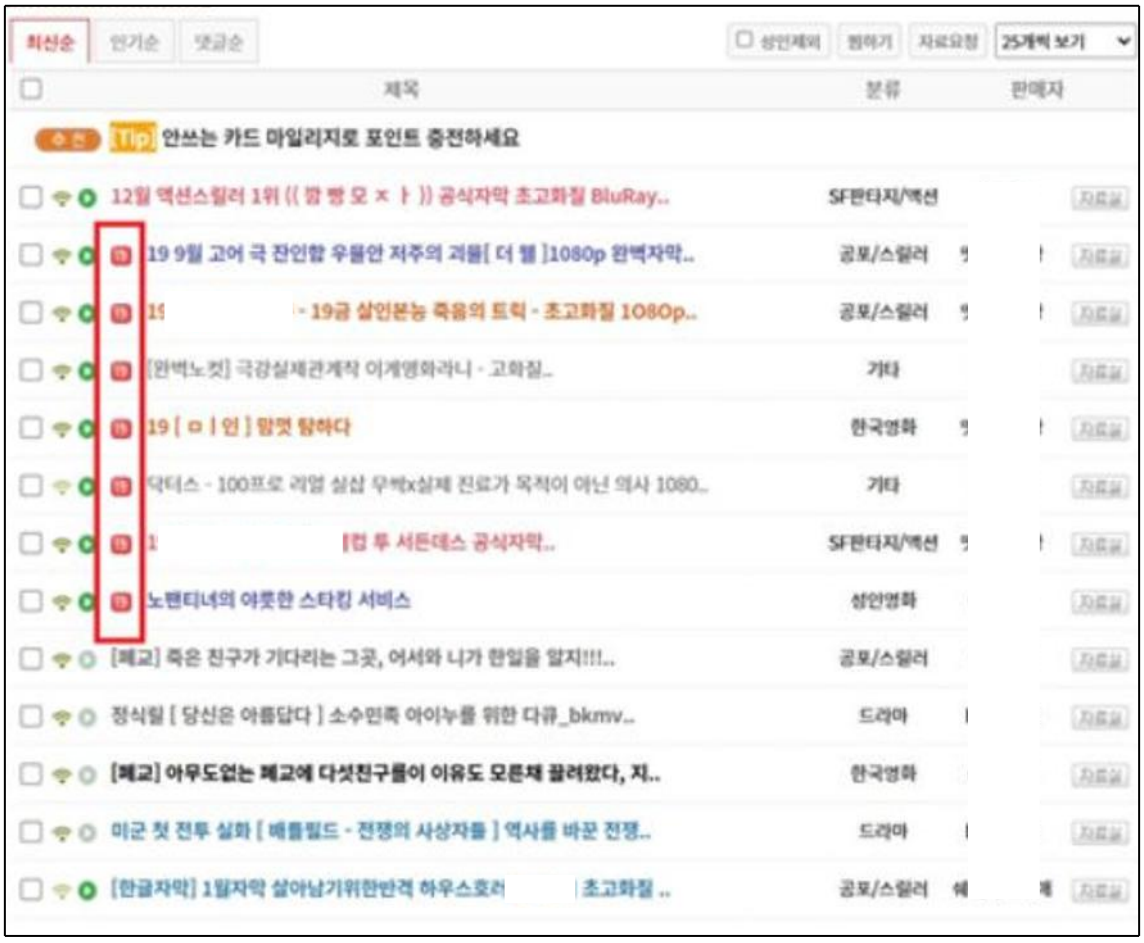

-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 파일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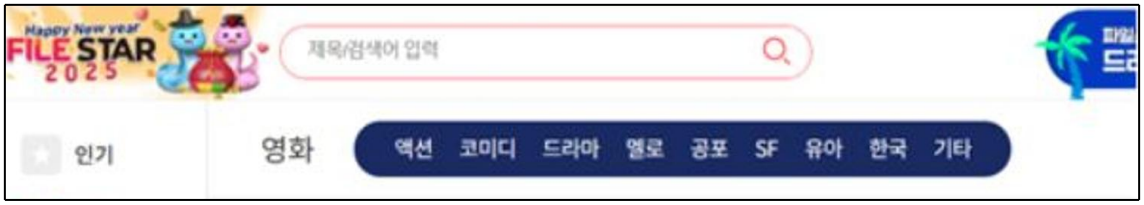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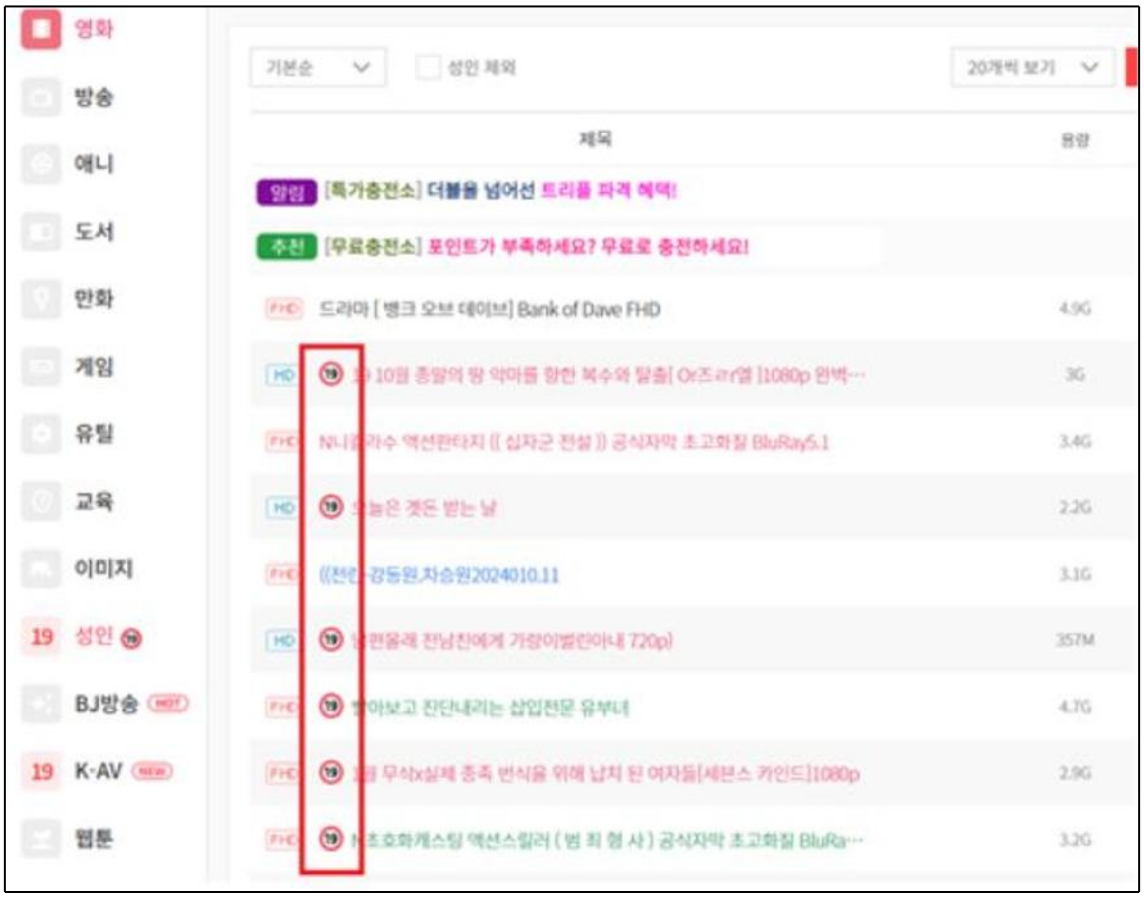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

· 쉐어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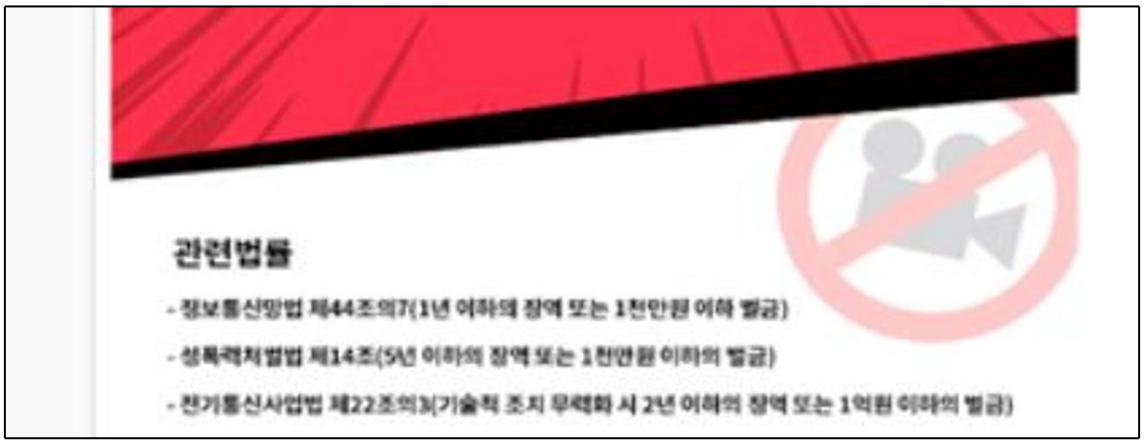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

· 파일스타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고객 상담센터 운영

· - 불법촬영물을 사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신고센터를 통하지 않고, 1:1상담하기 게시판 및 고객 콜 센터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쉐어박스: 이메일 : shareboxcs@gmail.com, 고객 상담센터: 1661-0872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고객 상담센터 운영

· 파일스타 이메일: help@filestar.co.kr / 고객 상담센터: 1644-4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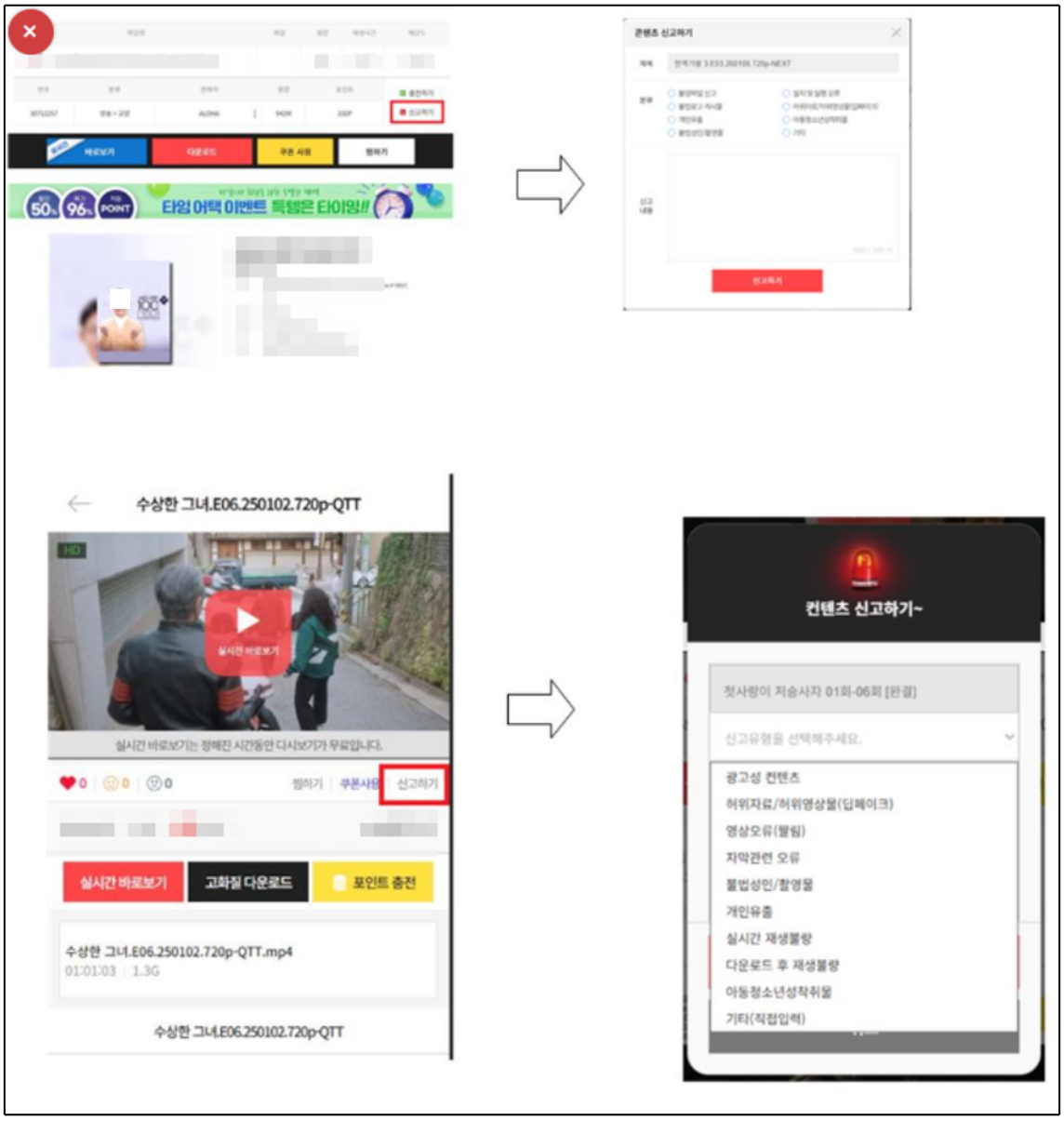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5 .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접수	신고·삭제요청인	피해자등	-	-	-	-	-	-	-	-	-	-	-	-	-
		기관·단체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	-	-	-	-	-	-	-	-	-	-
처리결과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
		각하·해당없음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비고			쉐어박스 및 파일스타 신고 건수 없음.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웹플레이는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불법영상물 유형	세부유형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정보	성적 불법촬영정보 (제14조) -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불법촬영정보, - 성적촬영물의 당사자 동의 없는 유포 정보 성적 허위영상정보 (제14조의2) -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영상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제24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사진 등
기타 디지털성범죄 정보	성적 불법촬영정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 - 성폭력 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

- 피해접수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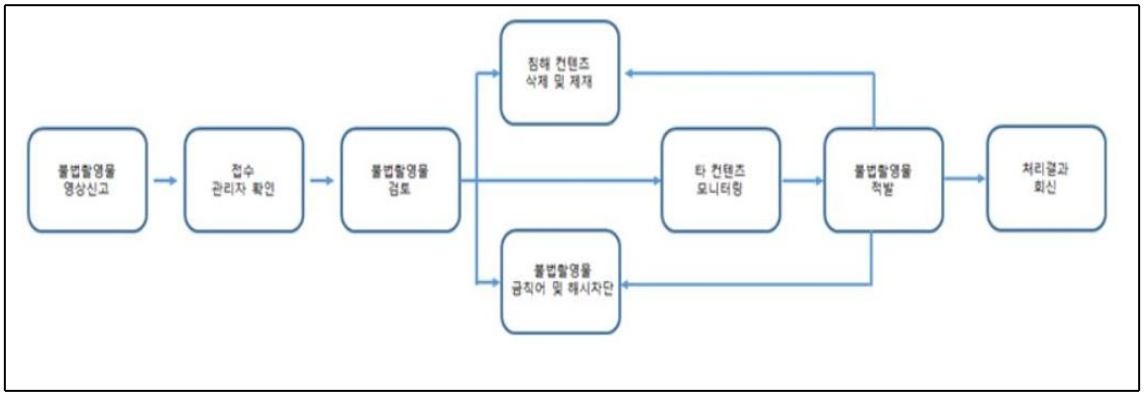

○ 신고　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1.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접수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 컨텐츠 삭제 및 제재 조치를 한다.
단, 확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2. 해당 불법촬영물을 등록한 전송자(판매자)에게 경고문구 등 주의 안내를 보낸다.
경고 누적 3회 이상이 되면 판매자 자격 박탈 처리를 한다.

3. 해당 게시물은 금칙어 및 해쉬값 차단 조치를 통하여 동일한 해쉬값으로 등록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위반 컨텐츠 조치 및 업로드 중단 조치를 통해서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용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4.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3년이상 보관한다.
3.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보관한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지정일
정	허동규	경영지원	대표이사	2021-03-23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법정교육	2025-08-2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허동규	2	방미통위지정
내부교육	2025-08-26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허동규 대표 외 16명	1	자체교육
내부교육	2025-10-20	불법촬영물 사례 및 신고	허동규 대표 외 16명	1	자체교육

〈 교육 증빙 〉

발급번호 : 2025-il-046-0001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허동규
소　　속 : ㈜웹플레이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5. 08. 19. ~ 2025. 08. 25.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08. 25.

방송통신위원회